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동양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동양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7.4.1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4.2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동양자산운용 본점
   (☎02-3770-1300 www.tyam.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 2017.4.19)

동양 하이플러스채권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펀드코드: 58431)

투자 위험 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 채권,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며, 주로 BBB-등급 이상의 회사채 등에 60%이상 투자하여 이자 및 자본소득을 추구 ■ 목표듀레이션은 평균 0.7년~1.3년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동양자산운용㈜ (☎ 02-3770-13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효력발생일	2017.4.29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A-G	B	B-G	C-P	S	C-P1	S-P
가입자격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자	클린 클래스 주3)	제한 없음	클린 클래스 주3)	퇴직연금	펀드온라인코리아 가입자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기준)		없음			0.3 %	0.225 %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에 한하여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판매	0.3980 %	0.1990 %	0.2985 %	0.2000 %	0.1500 %	0.1600 %	0.1500 %	0.2790 %	0.0837 %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0.160%, 수탁회사보수: 0.02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2%								
	기타 주2)	0.0025 %	0.0011 %	실비	0.0000 %	실비	0.0000 %	0.0016 %	0.0020 %	0.0000 %
	총보수·비용	0.5925 %	0.3921 %	0.4905 %	0.3920 %	0.3420 %	0.3520 %	0.3436 %	0.4730 %	0.2757 %
	합성 총보수·비용	0.6009 %	0.4006 %	0.4905 %	0.4004 %	0.3420 %	0.3608 %	0.3521 %	0.4817 %	0.2844 %

주1) 위의 종류 수익증권 외 다른 종류 수익증권(I,C-I,C-W)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매입방법	(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이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에 3영업일 지급 (17시 이후) 4영업일 지급
기준가	■ 산정방법 :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BI120 채권지수

2. 투자전략

- 채권운용 기본전략으로는 높은 YTM(수익률)을 가지는 채권으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듀레이션 전략과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
- 회사채의 신용등급 하한은 BBB-등급으로 당사에서 선정한 우량 기업위주로 투자하며, 편입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펀드의 평균 듀레이션은 평균 0.7년~1.3년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듀레이션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정호	1971	팀장	12개	8,574 억원	동양증권 채권팀(6년) 동양증권 채권영업팀 (7년)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 (5년)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현직)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6.04.20 ~17.04.19	15.04.20 ~16.04.19	14.04.20 ~15.04.19	13.04.20 ~14.04.19	12.04.20 ~13.04.19
Class A	1.97	2.07	4.31	2.58	4.38
비교지수	1.50	1.82	3.30	2.69	3.67

주1) 비교지수: KOBI 120 * 100%
주2) 종류 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이자율 변동,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어음 및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투자위험을 기재하였으며,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행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 주소)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58431
A	48779
A-e	B4949
A-G	BP334
B	59042
B-G	BP339
I	63114
C-I	AE960
C-W	AE961
C-P	AE962
S	AO985
C-P1	AW579
S-P	B160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종류: 증권 (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 홈페이지 참고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58431
A	48779
A-e	B4949
A-G	BP334
B	59042
B-G	BP339
I	63114
C-I	AE960
C-W	AE961
C-P	AE962
S	AO985
C-P1	AW579
S-P	B160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5.04.27	최초 설정
2006.04.28	종류형(Class) 투자신탁으로 변경
2006.07.26	Class B 추가
2009.04.30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동양HighPlus채권투자신탁1호 → 동양HighPlus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010.08.06	신탁업자 보수 인하
2011.5.18	책임운용역변경(손경수 → 이정호)
2013.1.2	종류수익증권 신설(C-I, C-W, C-P), 채권 투자대상 추가
2013.3.6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모투자신탁 신설), 명칭변경(동양 High Plus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 동양 High Plus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2014.2.14	종류수익증권신설(Class S수익증권)
2014.8.20	투자신탁 명칭 변경 (동양 High Plus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2014.10.15	종류수익증권신설(Class C-P1 수익증권)
2015.4.2	종류 수익증권 신설(Class A-e, Class S-P 수익증권)
2015.6.11	종류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Class C-I 수익증권)
2015.12.01	종류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Class C-P 수익증권)
2016.03.09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일부 변경(사모사채권 편입 가능, 채권 및 어음 "취득시"신용등급으로 변경)
2016.03.29	환매수수료 삭제
2016.7.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2017.3.8	결산방법변경(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결산), 정기갱신
2017.4.5	Class C-W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문구 추가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일부변경(전자단기사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편입가능)
2017.4.29	클린클래스 신설(A-G, B-G)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02-3770-13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7.4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정호	1971	팀장	12개	8,574 억원	유화증권(3.7년) 한국채권평가(6.2년)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현직)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정호	2011.5~ 현재

주1)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별	가 입 자 격	판매보수
Class A	제한없음	연 0.398%
Class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연 0.199%
Class A-G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연 0.2985%
Class B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연 0.200%
Class B-G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연 0.15%
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연 0.000%
Class C-I	건별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연 0.020%
Class 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	연 0.000%

	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다.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라.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연 0.160%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150%
Class 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 0.279%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연0.0837%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 투자신탁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동양하이플러스채권 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	**신탁재산의 60%이상**
동양재형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신탁재산의 6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기본운용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BBB- 등급 이상의 채권 및 A3- 등급 이상의 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로 투자한 채권의 이자수익과 채권의 가격변동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위험관리>** i) 신용위험관리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ii) 이자율 위험관리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헤지거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iii) 유동성 위험관리 우량 채권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로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이상**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채권	60% 이상 (단,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10% 이하)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후순위채권, 사모사채권,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대한민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국내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이하 “어음 등”이라 합니다)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일정기간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취득		집합투자업자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식관련사채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의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상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등의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높은 YTM(수익률)을 가지는 채권으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초과수익률을 추구하는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자투자신탁에서는 특별한 위험관리 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모투자신탁에서 위험관리전략을 구사하므로 아래 모투자신탁 위험관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가. 투자전략** 당사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은 팀원간의 분화된 리서치에 근거한 합의제에 의해 판단 오류를 최소화 하는 운용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운용의 기본 운용전략으로는 높은 YTM(수익률)을 가지는 채권으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초과수익률을 달성 하도록 합니다 듀레이션 전략은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경기흐름과 국내외 시장 환경 및 채권시장의 수급을 감안하여 장/단기의 만기를 가지는 채권간의 교체 매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전략을 활용 합니다.

	자산배분(Sector Allocation)전략으로는 산업동향과 채권수급 분석을 통해 국채/회사채/은행채/특수채 및 기타 채권 그룹에 대한 최적의 Portfolio 구성합니다. 회사채의 투자시에는 종목선택 기업의 재무비율 분석, 사업분석, 개별기업의 방문을 통한 심층분석으로 투자 Pool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후, 유안타증권 및 기타 금융회사들의 Credit Analyst 들과 정보 공유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확보하고 신용등급 상승을 통해 추가적인 평가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이 집합투자기구에서는 투자되는 회사채의 신용등급 하한은 BBB-등급으로 당사에서 선정한 우량 기업위주로 투자하게 되며 회사채의 편입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회사채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듀레이션젼략 및 자산배분(Sector Allocation)전략을 수행합니다. 펀드의 평균 듀레이션(가중평균 채권만기)은 당사의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목표듀레이션에서 운용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수준의 범위내에서 듀레이션 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채권,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며 주로 BBB-등급 이상의 회사채 등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이자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시황에 따라 주식관련 사채 등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의 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이 펀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펀드의 만기는 평균 0.7년 ~ 1.3년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금리 상승시 국채선물 및 Swap 계약을 통하여 금리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평가된 고금리 Credit(회사채)에 투자를 통한 이자수익과 듀레이션 조절을 통한 추가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운용할 계획입니다 * Swap 거래란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교환을 주로 의미하며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를 하는 계약을 통해 금리상승에 따라 사전 계약에 따른 고정금리(저금리)를 지급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고금리(주로 3개월 CD금리)를 수취함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손실을 Cover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상품입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i) 신용위험관리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의 매출액 및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밖의 시장정보나 그룹의 재무지원 가능성, M&A Issue 등을 고려하여 투자가능 기업군(투자 Universe)를 사전적으로 작성한 후 내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별된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이자율 위험관리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헤지거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자산가격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포지션을 시장에서 취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예측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자산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 방향의 자산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손실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iii) 유동성 위험관리

우량 채권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다. 비교지수

* 비교지수 : KOBI120채권지수

동 펀드에서 벤치마크로 삼고있는 채권지수는 KOBI120채권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이유는 동 펀드에서 목표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가 0.7년에서 1.3년 수준이고 동 지수의 채권평균만기는 평균 1에 근접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시장에서 일반적인 채권형펀드의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KOBI120채권지수란

- 기준일 : 2001.1.1
- 재투자 Call을 가정한 총 수익지수
- 종목구성
    - i) Duration을 투신사 Fund의 평균인 1을 기준으로 구성
    - ii) 단, 예보채 및 국고채 5년 지표는 duration 문제로 제외
    - iii) 만기 1개월 이상의 채권으로 구성
    - iv) 종목 수 120 종목

	- www.kispricing.com 참조

라. 비교지수

* 비교지수 : KOBI120채권지수

동 펀드에서 벤치마크로 삼고있는 채권지수는 KOBI120채권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이유는 동 펀드에서 목표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가 0.7년에서 1.3년 수준이고 동 지수의 채권평균만기는 평균 1에 근접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시장에서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의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KOBI120채권지수란
  - 기준일 : 2001.1.1
  - 재투자 Call을 가정한 총 수익지수
  - 종목구성
    - i) Duration을 투신사 Fund의 평균인 1을 기준으로 구성
    - ii) 단, 예보채 및 국고채 5년 지표는 duration 문제로 제외
    - iii) 만기 1개월 이상의 채권으로 구성
    - iv) 종목 수 120 종목
  - www.kispricing.com 참조

마.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동양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채권 및 어음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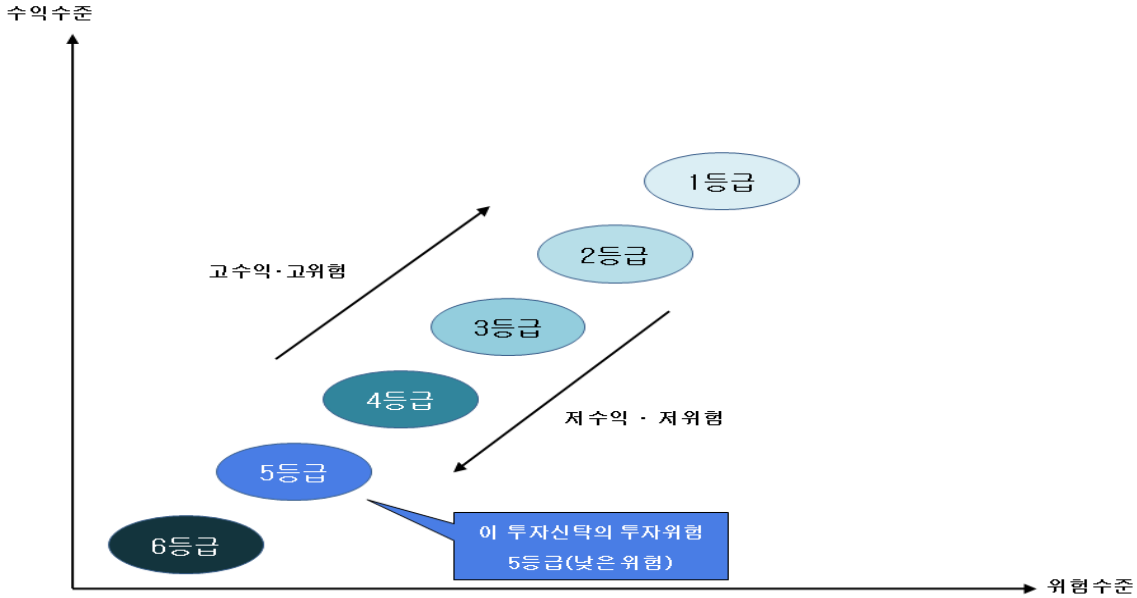
다.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

	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0.53%로 6등급 체계 중 5등급(표준편차 5%이하)에 해당하는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양자산운용 자체 위험분류 기준>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구 분	수 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경우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말하며,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부동산, 특별자산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수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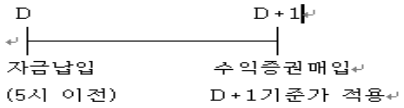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 입 자 격	판매보수
Class A	제한없음	연 0.398%
Class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연 0.199%
Class A-G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연 0.2985%
Class B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연 0.200%
Class B-G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연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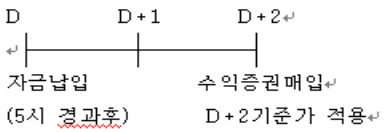
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연 0.000%
Class C-I	건별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연 0.020%
Class 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다.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라.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연 0.000%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연 0.160%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150%
Class 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 0.279%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연0.0837%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시(오후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17시(오후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환매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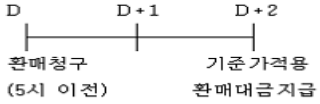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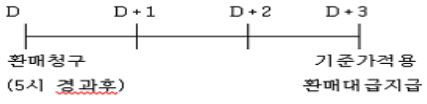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오후5시)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 예시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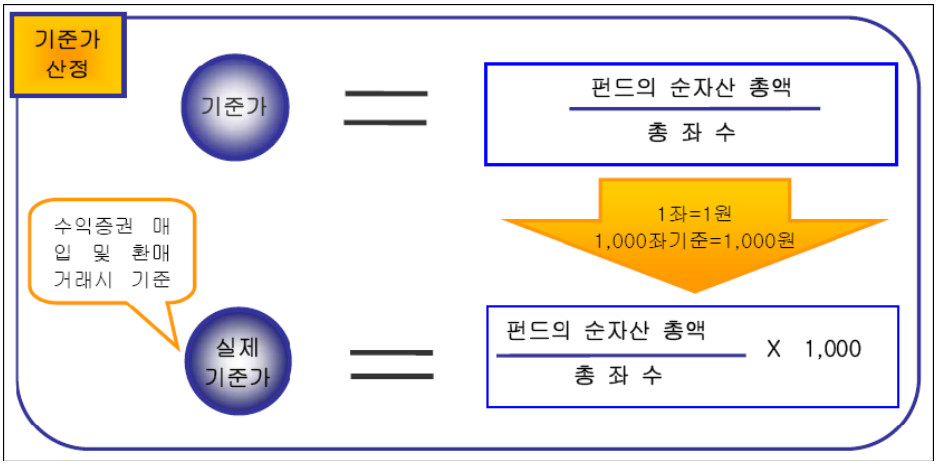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상이한 이유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매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	-	-
A-e	온라인가입자	-	-	-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	-
B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
B-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225%	-	-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 보유 또는 집합투자기구	-	-	-
C-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	-	-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	-	-
C-P	퇴직연금가입자	-	-	-
S	온라인 판매시스템가입자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C-P1	연금저축계좌가입자	-	-	-

S-P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연금저축계좌가입자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비율(모투자 신탁 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A	0.16	0.3980	0.02	0.012	0.0025	0.5925	0.6009	0.0077
A-e	0.16	0.1990	0.02	0.012	0.0011	0.3921	0.4006	0.0090
A-G	0.16	0.2985	0.02	0.012	실비	0.4905	0.4905	실비
B	0.16	0.2000	0.02	0.012	0.0000	0.3920	0.4004	0.0075
B-G	0.16	0.1500	0.02	0.012	실비	0.3420	0.3420	실비
I	0.16	0.0000	0.02	0.012	0.0024	0.1944	0.2028	0.0079
C-I	0.16	0.0200	0.02	0.012	0.0025	0.2145	0.2233	0.0100
C-W	0.16	0.0000	0.02	0.012	0.0024	0.1944	0.2030	0.0083
C-P	0.16	0.1600	0.02	0.012	0.0000	0.3520	0.3608	0.0121
S	0.16	0.1500	0.02	0.012	0.0016	0.3436	0.3521	0.0080
C-P1	0.16	0.2790	0.02	0.012	0.0020	0.4730	0.4817	0.0095
S-P	0.16	0.0837	0.02	0.012	0.0000	0.2757	0.2844	0.0101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61	192	336	752
Class A-e	41	129	225	507
Class A-G	50	158	275	618
Class B	71	158	254	535
Class B-G	57	132	214	455
Class I	21	65	114	259
Class C-I	23	72	126	285
ClassC-W	21	65	114	259
ClassC-P	37	116	203	457
Class S	36	113	198	446
ClassC-P1	49	154	270	606
Class S-P	29	92	160	36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율,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03월 0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한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

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5.1.1.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세액공제 대상 연간 저축금액은 400 만원 이내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으로 분리과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2기(2016.04.27 - 2016.10.26)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11기(2015.04.27 - 2016.04.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0기(2014.04.27 - 2015.04.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2기	제 11기	제 10기
	(2016.10.26)	(2016.04.26)	(2015.04.26)
운용자산	609,652,962,891	230,920,842,039	156,277,752,844
증권	609,602,448,929	230,870,582,602	156,259,279,07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0,513,962	50,259,437	18,473,76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3,101	41,171	16,501
자산총계	609,652,995,992	230,920,883,210	156,277,769,34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0	0	0
부채총계	0	0	0
원본	602,549,250,447	224,595,016,169	149,162,949,942
수익조정금	3,475,690,715	1,257,270,993	2,965,133,324
이익잉여금	3,628,054,830	5,068,596,048	4,149,686,079
자본총계	609,652,995,992	230,920,883,210	156,277,769,345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2기	제 11기	제 10기
	(2016.04.27 - 2016.10.26)	(2015.04.27 - 2016.04.26)	(2014.04.27 - 2015.04.26)
운용수익	3,628,054,830	5,037,208,527	4,131,249,213
이자수익	246,455	422,820	53,18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627,808,375	5,036,785,707	4,131,196,028
기타수익	0	31,387,521	18,436,866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3,628,054,830	5,068,596,048	4,149,686,079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12기(2016.10.26)		제11기(2016.04.26)		제10기(2015.04.2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50,513,962		50,259,437		18,473,766
1. 현금및현금성자산	50,513,962		50,259,437		18,473,76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609,602,448,929		230,870,582,602		156,259,279,078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609,602,448,929		230,870,582,602		156,259,279,078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3,101		41,171		16,50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3,101		41,171		16,501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609,652,995,992		230,920,883,210		156,277,769,345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0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0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0		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0		0		0
자 본						
1. 원 본	602,549,250,447		224,595,016,169		149,162,949,942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7,103,745,545		6,325,867,041		7,114,819,403	
(발행좌수 당기: 602,549,250,447 좌	이익잉여금	3,628,054,830		5,068,596,048		4,149,686,079
전기: 224,595,016,169 좌	수익조정금	3,475,690,715		1,257,270,993		2,965,133,324
전전기: 149,162,949,942 좌)						
(기준가격 당기: 1,011.79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609,652,995,992		230,920,883,210		156,277,769,34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09,652,995,992		230,920,883,210		156,277,769,34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2기(2016.04.27-2016.10.26)		제11기(2015.04.27-2016.04.26)		제10기(2014.04.27-2015.04.2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46,455		31,810,341		18,490,051
1. 이 자 수 익	246,455		422,820		53,185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1,387,521		18,436,866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627,808,375		5,039,233,919		4,131,196,02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423,162,295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204,646,080		5,039,233,919		4,131,196,02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0		2,448,212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448,212			
운 용 비 용		0		0		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628,054,830		5,068,596,048		4,149,686,07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06021176		0.022567714		0.027819818

2. 연도별 설정현황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1호(채권)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2,246	2,246	6,190	6,249	2,411	2,435	6,025	6,097
2015.04.27 - 2016.04.26	1,492	1,492	2,712	2,750	1,957	1,983	2,246	2,309
2014.04.27 - 2015.04.26	491	491	1,970	2,029	969	998	1,492	1,563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433,503,992좌/4,433,503,992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5,955,358,810좌/5,955,358,810원

가. 종류형펀드

Class 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1,893	1,893	5,445	5,487	2,285	2,302	5,053	5,097
2015.04.27 - 2016.04.26	1,471	1,471	2,010	2,033	1,588	1,601	1,893	1,935
2014.04.27 - 2015.04.26	469	469	1,959	2,003	958	975	1,471	1,533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863,201,593좌/3,863,201,593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5,834,479,907좌/5,834,479,907원

Class B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1	1	427	432	25	25	403	407
2015.04.27 - 2016.04.26	1	1	0	0	0	0	1	1
2014.04.27 - 2015.04.26	4	4	1	1	3	3	1	1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262,806좌/2,262,806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149,231좌/4,149,231원

Class 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0	0	2	2	0	0	2	2
2015.04.27 - 2016.04.26	0	0	0	0	0	0	0	0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35,214좌/235,214원

Class 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19	19	154	154	17	17	156	158
2015.04.27 - 2016.04.26	0	0	19	19	0	0	19	19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601,860좌/1,601,860원

Class 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30	30	18	18	10	10	38	39
2015.04.27 - 2016.04.26	24	24	8	8	1	1	30	31
2014.04.27 - 2015.04.26	20	20	5	5	1	1	24	25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78,421,695좌/78,421,695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08,406,682좌/108,406,682원

Class 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3	3	4	4	2	2	5	5
2015.04.27 - 2016.04.26	2	2	3	3	2	2	3	3
2014.04.27 - 2015.04.26	0	0	4	4	2	2	2	2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6,512,874좌/6,512,874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7,118,874좌/7,118,874원

Class C-P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9	9	27	27	4	4	32	32
2015.04.27 - 2016.04.26	1	1	9	10	1	1	9	9
2014.04.27 - 2015.04.26	0	0	1	1	0	0	1	1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0,500,734좌/20,500,734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204,113좌/1,204,113원

ClassC-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299	299	5	5	0	0	304	307
2015.04.27 - 2016.04.26	0	0	596	600	297	303	299	306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54,490,587좌/454,490,587원

Class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0	0	1	1	0	0	1	1
2015.04.27 - 2016.04.26	0	0	1	1	0	0	0	0
2014.04.27 - 2015.04.26	0	0	0	0	0	0	0	0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171,292좌/1,171,292원

(주2)2014.04.27 - 2015.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좌/3원

Class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4.27 - 2016.10.26	2	2	55	56	17	17	41	42
2015.04.27 - 2016.04.26	0	0	5	5	2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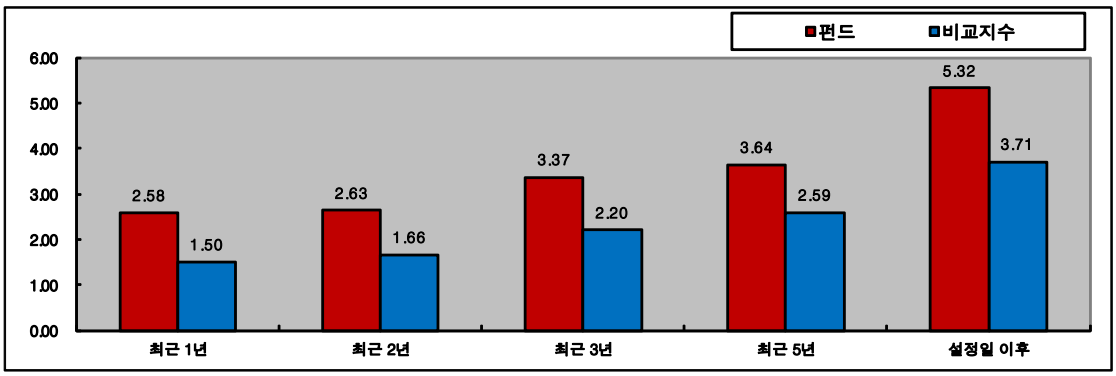
(주1)2015.04.27 - 2016.04.26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5,105,337좌/5,105,337원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 16.04.20 ~17.04.19	최근 2년 15.04.20 ~17.04.19	최근 3년 14.04.20 ~17.04.19	최근 5년 12.04.20 ~17.04.19	설정일 이후 05.04.27 ~17.04.19
펀드	2.58	2.63	3.37	3.64	5.32
비교지수	1.50	1.66	2.20	2.59	3.71
Class A	1.97	2.03	2.78	3.06	4.79
비교지수	1.50	1.66	2.20	2.59	3.71
Class B	2.17	2.23	2.97	3.23	4.92
비교지수	1.50	1.66	2.20	2.59	3.70
Class C-P	2.22				2.50
비교지수	1.50				1.67
Class C-W	2.38				2.33
비교지수	1.50				1.47
Class I	2.38	2.43	3.17	3.44	3.20
비교지수	1.50	1.66	2.20	2.59	3.66
Class S	2.22	2.28			3.04
비교지수	1.50	1.66			2.20
Class C-P1	2.09	2.15			2.40
비교지수	1.50	1.66			1.86
Class C-I	2.36				2.49
비교지수	1.50				1.65
Class S-P	2.29	2.36			2.37
비교지수	1.50	1.66			1.67
Class A-e	2.17				2.31
비교지수	1.50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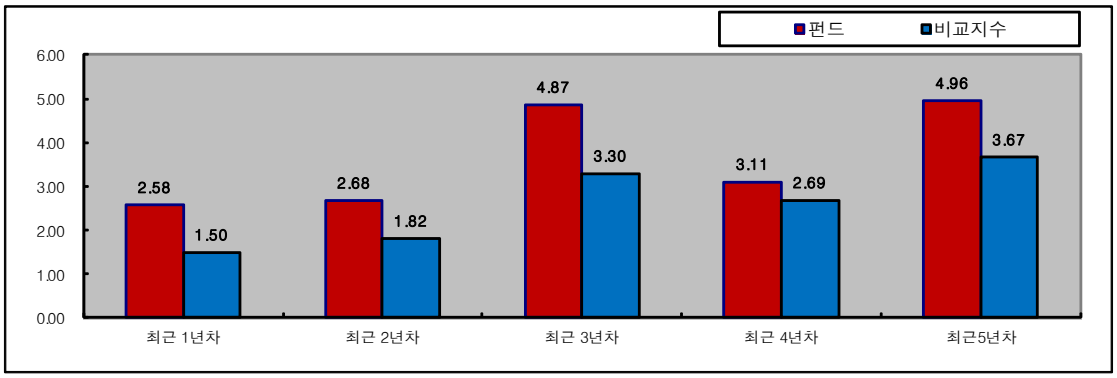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1 * [KOBI 12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16.04.20 ~17.04.19	최근 2년차 15.04.20 ~16.04.19	최근 3년차 14.04.20 ~15.04.19	최근 4년차 13.04.20 ~14.04.19	최근5년차 12.04.20 ~13.04.19
펀드	2.58	2.68	4.87	3.11	4.96
비교지수	1.50	1.82	3.30	2.69	3.67
Class A	1.97	2.07	4.31	2.58	4.38
비교지수	1.50	1.82	3.30	2.69	3.67
Class B	2.17	2.27	4.47	2.71	4.55
비교지수	1.50	1.82	3.30	2.69	3.67
Class C-P	2.22				
비교지수	1.50				
Class C-W	2.38				
비교지수	1.50				
Class I	2.38	2.48	4.67	2.92	4.79
비교지수	1.50	1.82	3.30	2.69	3.67
Class S	2.22	2.32	4.60		
비교지수	1.50	1.82	3.31		
Class C-P1	2.09	2.19			
비교지수	1.50	1.82			
Class C-I	2.36	2.64			
비교지수	1.50	1.84			
Class S-P	2.29	2.41			
비교지수	1.50	1.82			
Class A-e	2.17	2.48			
비교지수	1.50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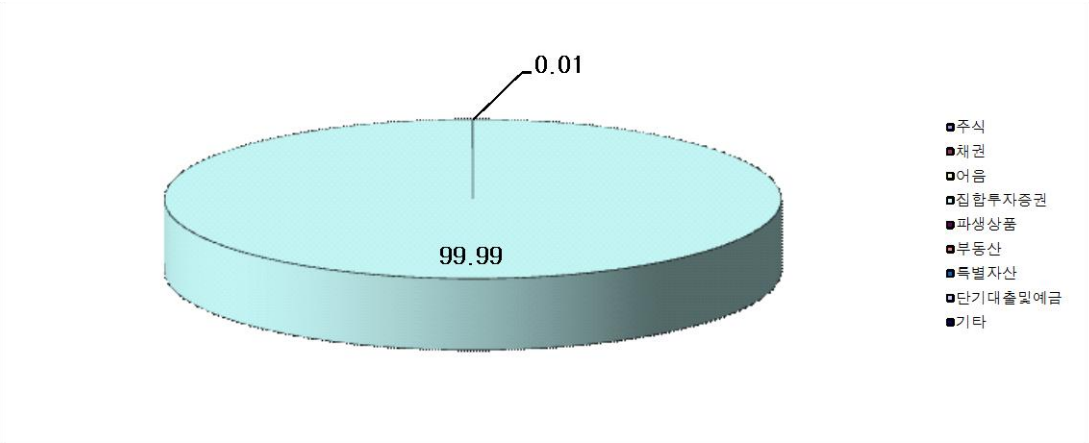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1 * [KOBI 12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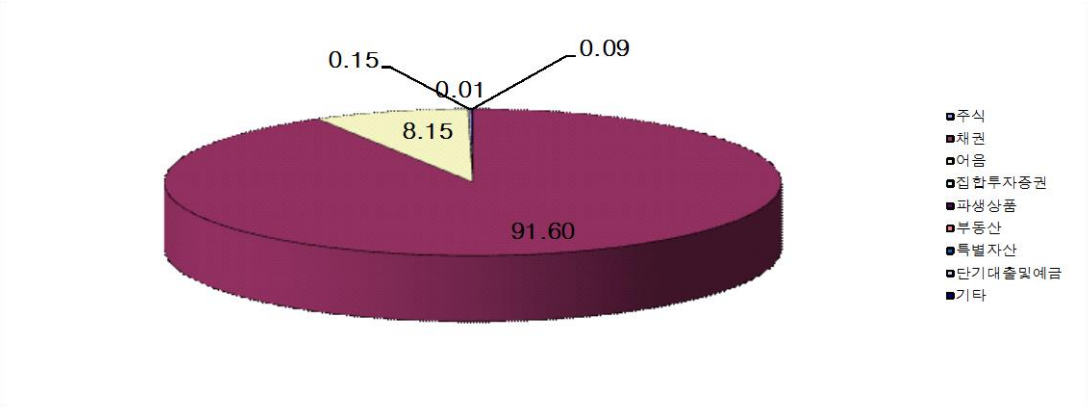
[2017.01.2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4,515	0	0	0	0	0	1	0	4,516
	(0.00)	(0.00)	(0.00)	(99.99)	(0.00)	(0.00)	(0.00)	(0.00)	(0.00)	(0.01)	(0.00)	(100.00)
합계	0	0	0	4,515	0	0	0	0	0	1	0	4,516
	(0.00)	(0.00)	(0.00)	(99.99)	(0.00)	(0.00)	(0.00)	(0.00)	(0.00)	(0.01)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7.01.2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6,140	546	0	1	0	0	0	0	10	6	6,704
	(0.00)	(91.60)	(8.15)	(0.00)	(0.01)	(0.00)	(0.00)	(0.00)	(0.00)	(0.15)	(0.09)	(100.00)
합계	0	6,140	546	0	1	0	0	0	0	10	6	6,704
	(0.00)	(91.60)	(8.15)	(0.00)	(0.01)	(0.00)	(0.00)	(0.00)	(0.00)	(0.15)	(0.09)	(100.00)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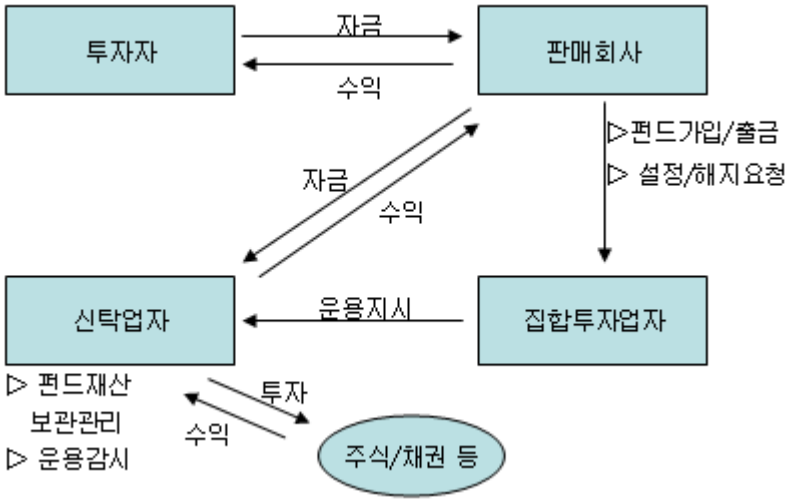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동양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02-3770-1300 www.tyam.co.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자본금	200억원
주요주주	동양생명 73%, 유안타증권 27%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

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15.12.31	16.12.31	항목	15.12.31	16.12.31
유동 자산	559.3	630.6	영업수익	260.3	275.7
고정 자산	247.9	599.5	영업비용	127.7	141.4
자산 총계	807.2	899.8	영업이익	132.6	134.3
유동 부채	61.1	52.8	영업외수익	0.0	2.1
고정 부채	-	-	영업외비용	0.5	1.0
부채 총계	61.1	52.8	세전순이익	132.1	135.4
자본금	200	200	법인세 비용	32.7	31.5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420.7	524.5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4.3	1.3			
자본총계	**746.0**	**846.9**	**당기순이익**	**99.4**	**103.9**

라. 운용자산 규모

[2017.04.19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5,025	74,677	8,240	0	1,561	4,450	0	2,113	2,615	0	50,874	149,55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T. 1588-1599
회사연혁	1929 7 조선저축은행 설립 1958 12 제일은행으로 행명변경 2000 1 뉴브리지캐피털 51% 지분확보 2005.4 Standard chartered 제일은행 주식인수(100%) 2005.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행명 변경 2012.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행명 변경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02-2168-0440
회사연혁 등	설립일: 2000.6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 2000.9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 2008.5
홈페이지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KIS 채권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 02-3215-140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T. 02-399-3350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T. 02-398-3900	www.nicepni.com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T.02-721-5300	www.fnpricing.com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합니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

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

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1. 채권중개회사 선정기준

- 당사의 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고객 수익에 기여하고자 함.
- 채권거래가 익일 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 확보

1) 선정기준

가. 거래상대방 (증권사 및 선물사)의 선정은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가중치

- 재무건전성 : 30% (절대평가) * 영업용순자본비율, 총자본금 등
- 시장점유율(M/S) : 10% (상대평가)
  * 협회 채권거래량 기준 또는 당사채권 거래량 기준
- 매매체결능력 : 30%(상대평가) * 당사 호가제시대비 적정호가 체결능력
- 리서치 및 시장분석서비스 : 25%(상대평가)
  * 거래상대방의 리서치부서 및 애널리스트 보유 유무 및 당사 세미나 시행여부
- 운용지시처리의 신속, 정확성 : 5% (상대평가)
  * 거래후 발생하는 Back-Office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다. 당사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는 가항의 평가기준이외의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방법

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매분기 단위로 실시합니다.

나. 절대평가항목이외의 상대평가 항목은 각 운용역, 트레이더 및 운용지시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 평가대상은 재무적 안정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에 따른 주문배분

가. 평가점수의 상대비율에 따라 A,B,C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나. 상대비율이 상위 20%를 A그룹, 상위 20%~50%를 B그룹, 50%미만을 C그룹으로 합니다.

다. 당사 전체거래량을 기준으로 A그룹에 60%이하, B그룹에 40% 이하, C그룹에 20% 이하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다항의 배분비율에도 불구하고 관계증권사에 대한 배분비율은 그룹과 관계없이 법정비율은 그룹과 관계없이 법정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2. 주식 및 장내파생 중개회사 선정기준

1) 평가기준

가. 기업분석자료 제공

- 기업분석자료 내용 및 투자의견의 정확성
- 종목추천 및 Update

나. 기업방문/세미나 : 기업방문 주선 및 세미나 주관

다. 주문체결/매매협조 : 신속한 주문체결 및 매매 협조

라. 기타 요청업무의 신속정확성

마. 시장정보 제공 : 투자 아이디어 및 시장정보 제공

바. 수수료율 : 낮은수수료 적용

2) 중개회사의 관리

가. 집합투자업자는 매월말 위탁매매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중개회사를 선정하여 1개월간 거래를 하고 다음 월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나. 특정 중개회사와 위탁매매 업무 수행 중 중개회사의 중대한 오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매매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중개회사 선정의 특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이익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의 수급 불균형 또는 프로그램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특정 증권사만이 매매가 가능한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경우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 고 : 펀드용어 정리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관리/보관하는 회사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